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31 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임오경·이기헌·김재원

박 정•진선미•한민수

박수현 · 임미애 · 강유정

윤후덕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. 특히 RH-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음.

위와 같은 이유로 「주민등록법」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운전 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.

이에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85조제3항 신설, 제87조의2 제1항 등). 법률 제 호

##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전단 중 "제4항까지에"를 "제5항까지에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제3항 또는 제4항에"를 "제4항 또는 제5항에"로 한다.

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행정 안전부령에 따라 성명, 사진, 면허번호, 주소 등을 수록한다. 다만, 혈액형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.

제87조의2제1항 중 "제4항까지"를 "제5항까지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전면허증 혈액형 수록에 관한 적용례) 제8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증을 발급(제86조에 따른 재발급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5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       | 제85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               |
| ·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·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|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성명,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진, 면허번호, 주소 등을 수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록한다. 다만, 혈액형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        |
| 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 | 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          | <u>⑥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          | <u>제5항</u>                        |
| 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           | <u>까지에</u>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. 이 경         |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         | <u>제4항 또는 제5항에</u>                |
|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허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.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87조의2(운전면허증 발급 대상        | 제87조의2(운전면허증 발급 대상                |

| 자 본인 확인) ① 지방경찰청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장은 제85조제2항부터 <u>제4항까</u>    |
| <u>지</u> ,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|
|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(이하             |
|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         |
| "운전면허증 발급"이라 한다)하           |
| 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             |
| 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             |
| 록증이나 여권, 그 밖에 행정안           |
| 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            |
| 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            |
| 를 확인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|

②・③ (생 략)

| 자 본인 확인) ①   |
|--------------|
| 제5항까         |
| <u> </u>     |
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
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